조달청 우수제품
제 2019062 호

Technology and Human's Junction

티제이원 신제품(NEP) 인증 의무구매 제도 안내

CCTV 영상감시장치 전문(NEP-MOTIE-2020-091)

인증번호 : NEP-MOTIE-2020-091
동영상 일방향성 전달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CCTV 영상공유 및 영상감시장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KNEP 한국신제품인증협회

tjONE
| 주 | 티제이원

ABOUT

TECHNOLOGY
FOR HUMAN

www.tjonecctv.com

주식회사 티제이원은

시큐리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과 우수한 인재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해킹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제이원은 CCTV 해킹방지 망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제품(NEP)인증, 신기술(NET)인증, 조달우수제품지정,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상생협력제품인증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R&D, R&C로 티제이원의 신기술 개발 우수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관 운영 효율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로 신기술과 차세대 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Technology and Human's Junction

tjONE

| 주 | 티제이원

㈜티제이원 신제품 소개

1) 제품 개요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카메라 제품 내부에 있는 백도어, 멀웨어, 봇 등의 악성코드가 기관 내부망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CCTV 해킹방지장치
- 공공기관의 영상을 외부로 공유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영상을 공유하는 경로로 악성코드 유입을 막는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맞춘 데이터 단방향 전송방식의 물리적 CCTV 해킹방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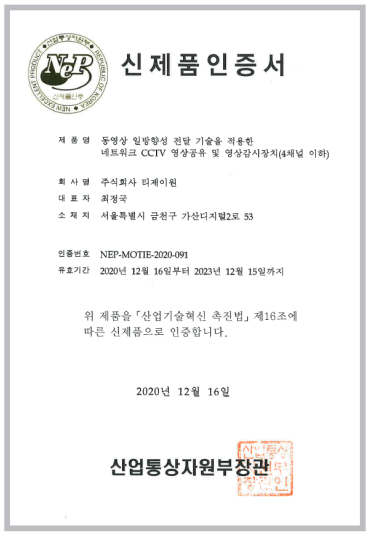

신 제 품 인 증 서

제 품 명 동영상 일방향성 전달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CCTV 영상공유 및 영상감시장치(4채널 이하)

회 사 명 주식회사 티제이원
대 표 자 최정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인증번호 NEP-MOTIE-2020-091
유효기간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위 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으로 인증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제품 특징

- 악성코드 차단 : 내부망과 CCTV망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유입되는 악성코드 필터링
- 안전한 영상 공유 : 데이터 단방향 전송 방식의 물리적 망분리 장치
- HTML5 웹 표준 준수 : 액티브X(Active-X) 및 플러그인(Plug-In) 설치가 필요 없음
- 모든 네트워크 카메라 호환 : ONVIF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국내외 모든 네트워크 카메라 호환

신제품(NEP) 인증 **의무구매** 제도

NEP(New Excellent Product),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Ⅰ.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01. 의무구매 도입 배경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국내 최고의 신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NEP인증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운영중

02.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NEP제품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NEP인증제품 의무구매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NEP인증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 규격이 같은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을 말함

(의무구매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부, 처, 청, 위원회, 실)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자치구, 지방공기업)
교육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산업부장관고시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 지원

❶ 【NEP인증제품 의무구매(수의계약)】

구 분	내용	비고
공공기관 구매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산업통상자원부) *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20%이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NEP인증제품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6호 라목 3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 제1항 7호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❷ 【NEP인증제품 구매면책제도】

➔ 공공기관이 NEP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2)

❸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면제제도】

➔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NEP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❹ 【개선권고 제도】

➔ NEP제품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를 위해 NEP 의무구매 미이행 기관 대상 개선·권고요청

〈개선권고제도〉

* 의원발의: 2011.8.25 김재균의원 대표발의(법 제 17조의2제1항, 2항~4항 신설) (시행일: 2012.6.5.)

❺ 【개선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공고 제도】

➔ 의무구매 미 이행 개선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 공고

〈공고제도〉

* 의원발의: 2013.7.5 조경태의원 대표발의(법 제17조의2제5항, 7항, 9항 신설)

* 시행일: 2014.5.20

❻ 【공기업 · 준정부기관「정부권장정책」지표 반영】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산출 및 결과 (100)	1. 달성도(100)	1-1. 기술개발제품 구매성과	100	정량
		1-2.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여부(가감점)	**±10**	**정량**

* 인증신제품(NEP)의 의무구매 비율(20%)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❼ 【지방공기업「정부권장정책」지표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0.3점, 정량)

신제품(NEP)[1], 신기술(NET)[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3], 우수R&D 혁신제품[4], 구매 실적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	**신제품(NEP) 구매실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신제품인증 홈페이지 확인 (www.buynp.or.kr)**
2	신기술(NET) 구매실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신기술인증 홈페이지 확인 (www.netmark.or.kr)
3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제품구매 실적	상용화 이전 혁신시제품 중 조달청 전문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구매실적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공고확인 (www.pps.go.kr 또는 venture.g2b.go.kr)
4	우수R&D혁신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재부에서 우수R&D제품으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의 구매실적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확인

《점수 부여 기준》

각 기관의 1년 물품구매액 중 상기물품 구매합산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유형별** 및 기관의 조직 규모 등을 구분하여 혁신성장 관련 제품 구매실적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점수 부여

* (기관 1+2+3+4 구매액 /기관 1년 물품구매액)×100

** 도시철도, 도시공사, 시설공단(광역, 시군, 자치구), 관광공사, 환경공단(광역, 기초), 특정공사 · 공단(광역, 기초)

등 급	S	A	B	C	D
비율(%)	10	20	30	30	10
점수(점)	0.3	0.2	0.1	0.05	0

Ⅱ.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실적조사 및 이행여부 확인

01. NEP제품 의무구매 실적조사(공공기관 대상)

-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 ~ 2월 중 NEP 제품 의무구매 실적 제출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02. NEP정보관리시스템(BUYNP) 연계시스템 구축 현황

- NEP의무구매 실적 자동연계에 따른 의무구매 이행 여부 점검 신뢰성 강화(조달구매실적은 G2B와 자동연계)

  - **'20년 이후**에는 **의무구매 모수에 대한 점검 강화**에 따라 NEP의무 구매 **미이행기관에 대해 개선권고 및 평가점수 감점이 반영**되어 **NEP 의무 구매 이행율 제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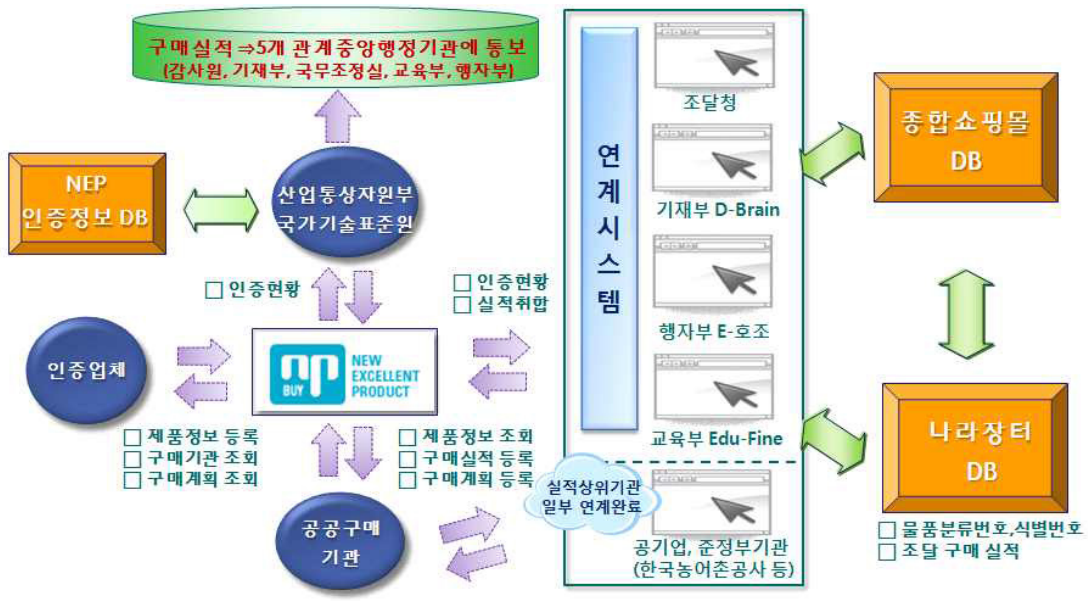

- 신규 NEP인증기업은 공공구매기관이 인증신제품 검색 및 열람, 구매실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필히 사이트에 가입하여 인증제품등록**을 하여야 함
- NEP인증제품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NEP제품 정보 및 의무구매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판로의 어려움 발생 가능

- NEP제품 의무구매 실적 취합 및 기관평가, 개선권고, 공고

(2월) 공공기관 조달구매 현황 조사 → **(3월~4월)** 공공기관 제출실적 취합 및 공공기관 평가 →
(4월) 평가결과 해당기관 통보 → **(5월)** 미이행기관 사유조사 및 개선권고 → **(6월)** 개선권고 미이행 기관 공고

- NEP의무구매 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 구매촉진 협조요청

('20. 8월) 기관별 구매실적 및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매촉진 협조요청**

* 관계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중앙행정기관 평가), 행정안전부(지자체 평가), 교육부 (교육자치단체 평가), 기획재정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감사원(감사반영)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03.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이행여부 확인방법

- NEP제품 의무구매실적 집계방법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or.kr)와 연계**되어 **NEP제품 모수 계약현황 파악**
  ②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된 Buynp시스템에서 **NEP제품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고, **구매액 및 의무구매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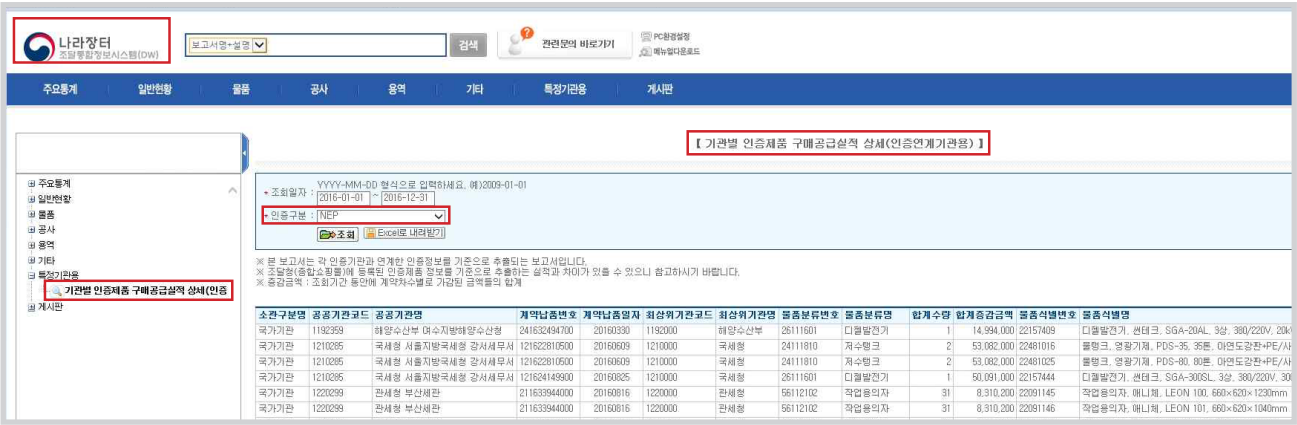

[조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별 인증제품 구매 실적 파악]

③ 기관별 NEP제품 관련규격 구매(계약)총액 대비 NEP제품 구매(계약)액을 확인하여 20% 의무구매 준수 여부 판단

NEP제품 구매액 / 기관별 NEP제품 모수 구매액 x 100 = 의무구매 이행율

Ⅲ.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01. 미이행 품목 조사 및 개선권고

- NEP제품의 구매실적 집계 결과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

(의무구매 미이행에 따른 개선권고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2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2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02. 개선권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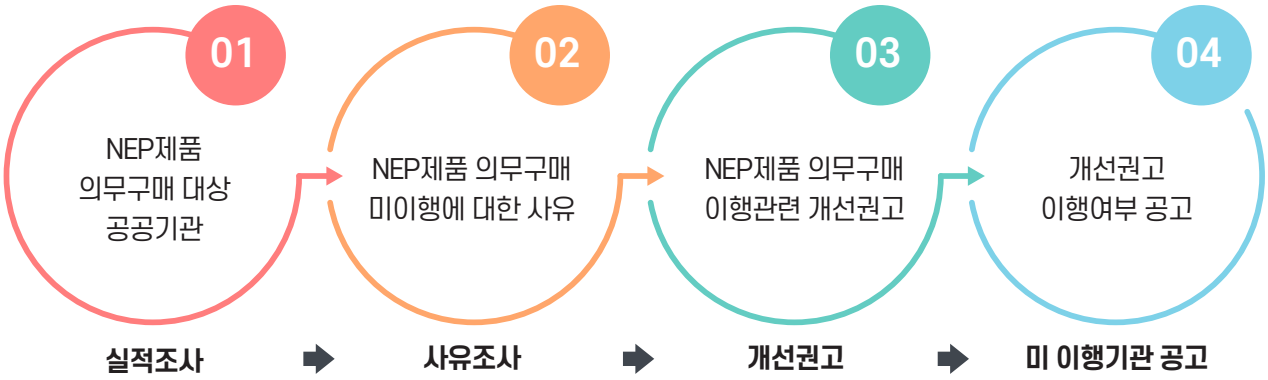

03. 공공기관의 개선권고 이행여부 공고

- NEP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

(개선권고 이행여부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실적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해 **권고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여야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개선권고 이행여부 공고

붙임1. 신제품(NEP) 인증제도 개요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대체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추진경위

-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 개선과 신기술 국산화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인증 및 자본재류 우수품질인증제도 시행
- '06년 인증신제품의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5개 부처 신기술제도를 통합 개편(NET, NEP)
  * 과기부(KT), 산자부(NT,EM,EEC), 정통부(IT), 건교부(CT), 환경부(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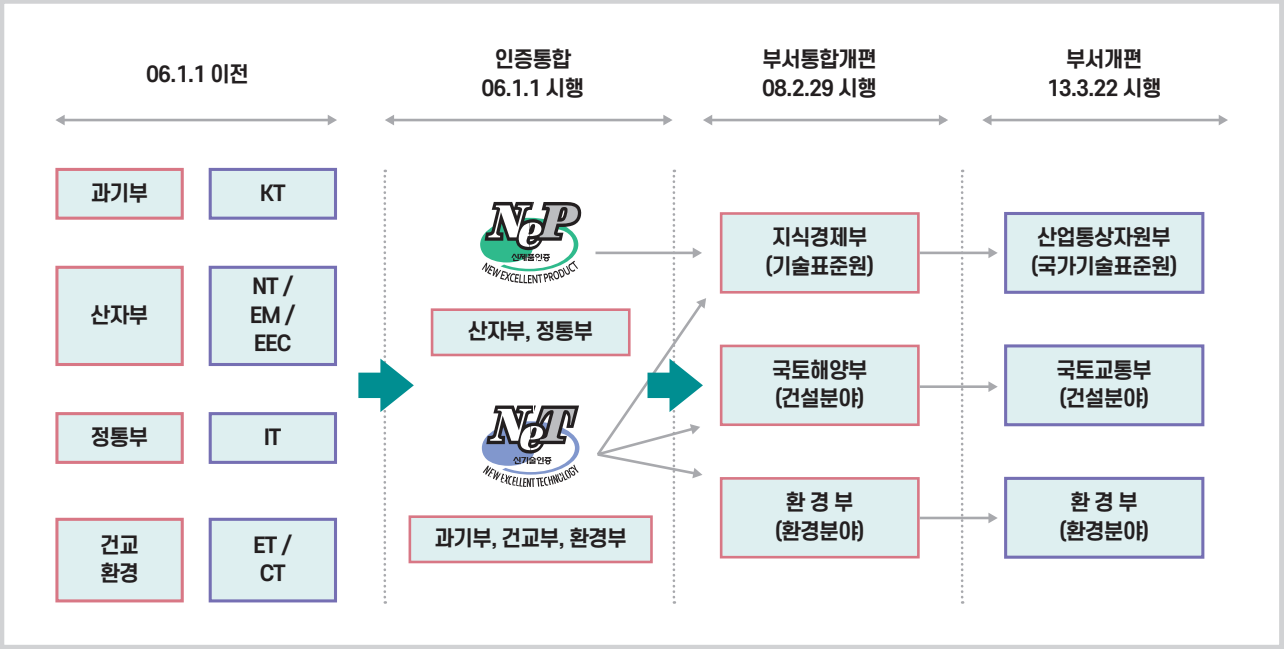

인증대상

- 사용자에게 판매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대체기술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성능 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인증유효기간 : 3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붙임2. 신제품(NEP) 인증제도 관련 법령

01. 신제품(NEP)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 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내지 25조

제 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③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02. 공공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

제 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조의 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제 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 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 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 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3. 신제품(NEP) 정보관리시스템(Buynp.or.kr) 등록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바이엔피 접속	● 바이엔피 (http://www.buynp.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클릭 ● [인증기업] – [회원사검색] – [회원가입] – [로그인]
인증제품 상세정보 등록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인증제품관리]에서 제품 선택 후 상세정보, 이미지, 거래정보 입력 후 승인요청
승인처리	● 등록된 정보 확인 후 승인 처리됨 ● [제품검색] 내 제품전시 여부 확인
인증제품 정보 업데이트 (연중 수시)	● 인증제품의 이미지, 상세정보, 거래정보 등이 변경되면 바이엔피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인증제품관리]에서 변경된 정보 수정

| 주 | 티제이원

www.tjonecctv.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6층
TEL : (02)707-2588
FAX : (02)707-2589
E MAIL : tj2588si@naver.com
www.tjonecctv.com

NOTES 본 카다로그의 내용은 외관 및 제품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